

〈판례연구〉

業務上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한 自動車保險約款의 效力

梁 承 圭*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 다카 24070 판결—과기환송**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663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사건개요〉

原告 甲은 被告 乙 保險會社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2.5톤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1983.6.3에 保險期間을 6月로 하고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對人賠償責任을 담보하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을 체결하고 소정의 保險料 272,370원을 지급하였다.

甲회사 소속의 운전자 A는 1986.8.15. 13:15경 전주전립공사를 위한 근로자들인 피용자 14명을 운전석 옆자리와 적재함에 태우고 業務上 그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남면 평산리 오정리부락 입구 양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오던 訴外 B가 전방에 정차하는 시의버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中央線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는 순간 길옆 높이 약 6m 언덕 아래의 밭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訴外 C, D가 死亡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傷害를 입었다.

原告 甲은 전기공사도급 및 전기자재판매 등을 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加入業體이나 위 자동차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들과 망인들의 상속인들이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지게 되어 被告 乙에게 그 損害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 법원공보 874호(90.6.15.), 1141면.

賠償額 상당액을 保險金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被告 乙은 이 사건 자동차보험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免責約款을 들어 그 被害者들이 原告 甲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므로 保險金支給義務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甲이 乙을 상대로 保險金請求의 訴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인 부산지법 1988.12.15. 선고, 88가합 6767 판결은 「위 면책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 규정이나 신의성실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判示하였고, 제2심인 부산고법 1989.7.19. 선고, 89나978 판결은 「위 면책조항은 보험가입자의 본래의 의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 보험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이라 하겠으므로 무효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判示하여 保險會社의 保險金支給責任을 인정하였다. 이에 被告 乙이 上告하기에 이른 것이다.

〈판결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 2543 판결, 1986.10.14. 선고, 84다카 122판결, 1989.11.14. 선고, 88다카 29177 판결 각 참조),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도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당원 1989.11.14. 선고, 88다카 2917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원, 피고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료까지 지급하였음이 분명한 바, 위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면책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가(예컨대,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되어 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할 정도의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위 면책조항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되는 규정이다),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위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아니하거나 보험업자의 설명을 듣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약관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약관이 보험계약당사자인 원, 피고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음을 전제로 나아가 면책조항의 유효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그 판시이유에서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이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인 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 소정의 보험자의 면책사유보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면책사유를 변경함으로써 같은 법 제 663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위 1989.11.14. 선고, 88다카 29177판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즉 보험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위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 2항 제 4호는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위 면책약관이 무효라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실시와 같이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약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研 究

I. 문제의 所在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 補償하는 産業災害補償保險은 保險者의 保險給與額이 정해지고 있는 有限賠償責任保險이고 (産災保 9조 이하 참조), 自動車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은 被保險者가 被害者에 대하여 法律上 賠償責任을 지는 모든 損害를 補償하는 無限賠償責任保險으로 영위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동차의 사고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가 생긴 경우에도 그 사고 자동차가 自動車綜合保險(이하 綜合保險이라 함)에 들어 있으면 自動車保險者로부터 補償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 2항 4호는 對人賠償의 경우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免責事由를 정하고 있다. 이것은 綜合保險에서 業務上의 災害事故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人的 損害에 대하여는 保險者의 擔保危險에서 제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業務上의 災害를 입은 경우에는 綜合保險의 保險保護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그러한 綜合保險約款의 免責事由는 商法 제659조의 免責事由보다도 被保險者의 불이익으로 변경한 것이거나 約款規制法 제 6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동 제 7조의 免責條項의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無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리하여 이 사건에서는 먼저 保險約款에서 정한 免責事由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約款規制法과의 관계가 무엇이나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II. 保險者의 免責事由의 뜻

保險契約은 保險契約者가 保險料를 지급하고, 保險의 目的에 관하여 우연한 事故가 생길 경우에 保險者가 保險金額을 지급하기로 하는 有償·雙務契約이다(商 638조). 그러나 保險契約法이나 保險約款에서는 保險制度의 성격상 保險期間 중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도

保險者의 保險金支給責任을 면제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라 한다.

保險制度는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危險을 轉嫁하고 분배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arrangement for transferring and distributing risks)⁽¹⁾로서 保險契約은 어느 정도 被保險者를 따라다니는 危險을 保險契約者로부터 保險者에게 떠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 그리하여 保險者는 保險商品을 개발할 때에 保險契約에서 引受할 危險의 범위를 뚜렷이 밝혀야 하는 것이고, 普通保險約款에는 保險者가 保險金を 지급할 사유와 保險金を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免責事由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³⁾ 이것은 保險者는 保險契約에서 정한 우연한 事故의 발생을 조건으로 保險金支給責任을 지게 되므로 그 保險事故의 범위를 뚜렷이 하여 道德的 危險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保險事業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⁴⁾

保險約款에서 정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保險事故의 원인과 관련하여 保險者의 責任을 면제하는 責任免除事由(exceptions)이고, 다른 하나는 保險契約에서 정한 保險事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擔保危險除外事由(exclusions)가 그것이다.⁽⁵⁾ 保險去來에서 사용하고 있는 普通保險約款에서 정하고 있는 免責事由가 責任免除事由와 擔保危險除外事由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가령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의 故意나 중대한 過失로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 保險者가 保險金支給責任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事故의 원인이 人爲的이라는 점에서 전자에 속하고, 傷害保險約款에서 「피보험자의 뇌졸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약관 3조 1항 5호)로 생긴 損害를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인 신체의 損傷을 요건으로 하는 傷害事故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保險者가 擔保하지 아니하는 危險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保險者의 免責事由는 保險者의 責任免除事由와 擔保危險除外事由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뜻있는 일이라 할 것이고, 保險約款에서 정한 免責事由가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는 그 保險契約에서 保險者가 擔保하고 있는 危險의 성질과 연관지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Ⅲ. 被保險者의 業務上의 災害免責

1. 保險約款의 規定과 그 뜻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2항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는데 제 4호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

(1) Robert E. Keeton & Alan I. Widiss, *Insurance Law*, Practitioner's Ed., 1988, p.3.

(2) Edwin W. Patterson, *Essentials of Insurance Law*, 2d, 1957, p.226.

(3) 保險業法施行規則 제 7 조 1호, 3호.

(4) 拙著, 保險法, 1987, 122면 참조.

(5) Patterson, *op. cit.*, p.249; Keeton/Widiss, *op. cit.*, pp.287, 547.

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이것은 근로자가 業務上의 災害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고(同法 78조 이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補償하기 위하여는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이 社會保險으로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業務上의 災害에 대하여는 綜合保險의 對人賠償責任保險의 擔保危險에서 제외하여 이를 免責事由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業務上의 災害免責約款의 效力

綜合保險約款에서 被保險者의 피용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人的 損害에 대하여 補償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免責約款은 商法 제659조의 규정보다 被保險者에게 불리하게 규정하여 같은 法 제663조에 의하여 또는 約款規制法 제 6 조 2항에 違反하여 無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大法院判決과 經濟企劃院의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 다카 29177 판결⁽⁶⁾은 被保險者의 공장구내에서 자동차의 운행 중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중상을 입은 被僱者에 대한 피보험자의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자가 위의 약관조항에 따라 면책을 주장한 사건에서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은 勞使關係에서 발생하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填補받도록 하고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填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면책조항이 상법 제659조에 규정된 免責事由보다 보험계약자에게 不利益하게 변경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判示하여 업무상의 災害事故에 해당하는 자동차사고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有效性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1990. 2. 19.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⁷⁾은 1988. 5. 9.에 農業振興公社의 職員 한 사람이 업무수행중 자동차사고로 死亡하여 그 遺族이 同公社를 상대로 損害賠償請求를 하여 1억 여원의 損害賠償金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自動車綜合保險約款 제10조 2항 4호는 消費者에게 부당한 權益侵害約款條項이라는 이유로 農業振興公社가 約款審査請求를 한 사건에서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同免責條項은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第 6 條 第 2 項 第 1 號 및 第 2 號에 該當되어 無效이다.」

라고 議決하고, 그 無效議決事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條項의 第 4 號와 第 5 號는 自動車事故의 被害者가 우연히 勤勞基準法에 依

(6) 법원공보 863호 29면.

(7) 拙稿, 自動車綜合保險約款의 業務上災害事故免責에 대한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 保險調查月報 1990年 5月號 23면이하 참조.

해 産業災害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事實을 自動車綜合保險에서 賠償하지 아니할 事由로 定하고 있으나(第5號는 第7次 約款審査委員會(88.2.22.)에서 無效로 既議決하였음), 이 경우 被害者는 自動車の 運行을 支配하는 地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自動車事故와 被害者의 業務遂行 사이에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被害者가 우연히 다른 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며, 그런 우연한 事由를 가지고 保險會社가 補償하지 아니할 事由로 삼는 것은 自動車事故에 基因하는 民事上的 不法行爲責任을 保障하는 自動車綜合保險契約의 趣旨에 어긋난다. 被害者가 다른 補償을 받는다면 그 範圍內에서 補償하지 아니할 수 있겠지만 그 範圍를 넘는 것은 保險會社가 補償함이 妥當하다.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은 과실의 有無를 따지지 않는 것인데 비하여 民事上(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上 내지는 民法上)의 賠償責任은 과실의 有無를 묻는 것이다. 그리고 前者에는 그 補償의 限度가 定하여 있는데 비하여 後者에는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위 第4號의 경우와 第5號의 경우에 共に 被保險者가 勤勞基準法에 의한 災害補償을 넘는 損害에 대하여 실제로 民事上的 賠償責任을 지게 된다. 第4號와 第5號 사이에 事實上的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는데도 第5號는 約款審査委의 無效議決에 依據, 但書規定으로 이러한 問題가 解消되었으나, 第4號는 如前히 이러한 民事責任의 引受를 拒否하고 있어 保險契約者 및 그 밖의 被保險者들에게 不當하게 不利할 뿐만 아니라, 契約의 去來形態 등 諸般 事情에 비추어 豫想하기 어려운 條項이므로 約款의 規制에 관한 法律 第6條 第2項 第1號 및 第2號에 該當되어 無效이다.

이와 같이 綜合保險의 근로자의 業務上的 災害에 대한 免責約款의 效力에 대하여는 大法院判決과 約款審査委員會審決이 서로 반대의 입장을 보임으로써 學界와 實務界의 커다란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大法院判決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입장⁽⁸⁾과 반대하는 입장⁽⁹⁾의 評釋이 나와 있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먼저 綜合保險約款의 災害事故免責約款에 대한 無效說이 주장하는 논거를 들면서 有效說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비판을 가하기로 한다.

(1) 約款審議委員會는 「피해자는 자동차의 運行을 支配하는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동차사고와 피해자의 업무수행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피해자가 우연히 다른 補償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이며, 그런 우연한 事由를 가지고 保險會社가 보상하지 아니할 事由로 삼는 것은 자동차사고에 기인하는 民事上的 不法行爲責任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을 넘는 손해에 대하여 실제로 民事上的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책임의 引受를 거부하는 동 약관 제10조 제2항 제4호는 保險契約者와 그 밖의 被保險者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계약의 去來形態 등 諸般 事情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므로 約款規制法 第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다」라고 결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災害事故의 특수성을 도외시하고 자동차보험자가 그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떠맡아야 한다고 한 점에서 문제가 있다.

(8) 拙稿, 産災事故와 自動車保險者의 免責事由, 損害保險 1990年 3月號 44-5면.

(9) 鄭東潤, 自動車綜合保險普通約款 중 業務上 災害事故 免責規定의 效力, 法律新聞, 1990. 8. 9. 자 11면.

保險契約에서 보험자가 擔保하고 있는 위험은 언제나 우연한 사고이다. 물론 綜合保險約款에서 保險者의 擔保危險에서 제외하고 있는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の 災害는 피용자가 스스로 자동차의 운전에서 종사하다가 일으킨 事故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被害者가 자동차의 運行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業務와 관련하여 被保險自動車를 타고 가다가 事故를 당하였거나 작업장에서 작업 중 자동차의 사고로 人的損害를 입은 것이 業務上の 災害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人的損害가 업무상의 재해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補償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통상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자동차보험자가 擔保하는 危險과 같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은 營業用自動車와 個人用自動車を 똑 같이 다룰 수 없고, 개인용자동차가 營業行爲를 함으로써 생긴 인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免責事由(개인용 약관 10조 1항 7호 참조)로 한 것과 견주어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自動車保險制度의 성격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擔保위험에서 제외한 동 보험약관의 조항이 約款規制法 제 6조 2항 제 1호와 제 2항에 해당되어 公正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고 한 約款審査委員會의 審決은 자동차보험계약의 성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2) 鄭東潤 교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災害補償이나 產災保險制度는 근로자의 福祉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고, 이 保險에 의하여 근로자가 業務上の 災害로 입은 실제의 損害의 補償을 다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一般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를 허용하고 있는 점(勤基法 87조 참조)에서 產災保險金을 초과하여 被保險者가 지는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서까지 自動車保險者의 免責으로 인정하는 條項은 綜合保險에 들으로써 자동차사고로 인한 모든 損害를 補償하여 주는 것으로 믿고 있는 고객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써 約款規制法 제 6조 제 2항에 위반되어 無效라고 풀이하고 있다.⁽¹⁰⁾

우리나라의 產災保險은 保險者가 근로자의 業務上の 災害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保險給與를 하는 일종의 社會保險으로서(產災保法 9조 이하 참조), 被害者에게 충분한 補償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被害者는 產災保險에 의한 補償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事業主를 상대로 一般不法行爲法上的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고, 이로써 事業主는 被害者에 대하여 產災保險金額을 초과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業務上の 災害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것이든 아니든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근로자의 業務上の 災害가 우연히 綜合保險에 든 자동차의 사고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損害賠償責任을 自動車保險者에게 돌려야 한다는 주장은 얼른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業務上の 災害에 대하여는 保險者의 擔保範圍를 확장하는 勤勞者災害保險에 의하여 이를 補償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근로자

(10) 鄭東潤, 同上.

의 業務上의 災害로 말미암은 死亡 또는 傷害는 使用者賠償責任(employers' liability)에 속하는 것이지⁽¹¹⁾ 自動車賠償責任保險에서 擔保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의 社會法典(Sozialgesetz) 災害保險(Unfallversicherung)에 관한 제636조 제1항은 企業主는 그 기업에서 從事하는 피보험자, 친족 및 상속인에 대한 노동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고 다만 그 勞動災害(Arbeitsunfall)가 고의로 발생하였거나 또는 일반교통의 관여에서 생겨난 경우에만 기업주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 그의 친족 및 상속인의 損害賠償請求權은 法令에 의하여 사회보험자가 勞動災害에 대하여 지는 책임의 범위로 減額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다.⁽¹²⁾ 이러한 立法例는 業務上의 災害事故를 비롯한 社會的 危險에 속하는 각종의 事故로 생긴 被害者의 損害에 대한 補償問題와 관련하여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業務上의 災害에 대한 損害補償額을 어느 정도 現實化하고 그 補償金額을 한도로 事業主의 責任을 인정하고, 事業主에게 故意가 없는 한 근로자의 一般不法行爲法上의 損害賠償請求權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被保險者의 被傭者의 業務上의 災害가 자동차사고로 생겼고, 그 事故車輛이 被保險者의 被害者에 대한 無限賠償責任을 담보하고 있는 自動車對人賠償責任保險에 들어있을 때에는 被保險者가 적어도 產災保險에서 補償하는 損害를 넘어서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을 損害에 대한 補償을 자동차보험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 擔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의 危險은 通常의인 것이고,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自動車事故는 통상적인 자동차의 運行으로 인한 사고와는 구별되는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같은 자동차사고라도 綜合保險約款에서는 피용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補償範圍에서 제외하여 이를 免責事由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국⁽¹³⁾이나 미국⁽¹⁴⁾의 自動車保險約款에서도 被

(11) Rowland H. Long, *The Law of Liability Insurance*, Vol. 2, 1988, p.10-44; Kenneth Canar, *Motor Insurance Theory and Practice*, 1979, p.257.

(12) 독일 Sozialgesetz Drittes Buch Unfallversicherung §636 Beschränkung der Unternehmerhaftung
(1) Der Unternehmer ist den in seinem Unternehmen tätigen Versicherten, deren Angehörigen und Hinterbliebenen, auch wenn sie keinen Anspruch auf Rente haben, nach anderen gesetzlichen Vorschriften zum Ersatz des Personenschadens, den ein Arbeitsunfall verursacht hat, nur dann verpflichtet wenn er den Arbeitsunfall vorsätzlich herbeigeführt hat oder wenn der Arbeitsunfall der Teilnahme des allgemeinen Verkehr eingetreten ist. Der Schadensersatzanspruch des Versicherten, seiner Angehörigen und seiner Hinterbliebenen vermindert sich jedoch um die Leistung, die sie nach Gesetz oder Satzung infolge des Arbeitsunfalls von Trägern der Sozialversicherung erhalten.

(13) 영국의 Motor Cycle Policy: Exceptions to Clause II. The company will not pay
3. in respect of death of or bodily injury to any person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such person's employment by the Insured Person on whose behalf payment is claimed.

(14) 미국의 Business Auto Coverage Form: Section II. Liability Coverage B. Exclusions. This insurance does not apply to any of the following:

4. Employee Indemnification and Employer's Liability "Bodily injury" to:

保險者의 피용자가 業務 중에 생긴 신체의 損傷에 대하여는 保險者의 免責事由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自動車責任保險의 擔保危險의 한계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綜合保險約款에서 「피용자의 업무상의 재해사고」를 免責事由로 한 것이 商法 제659조와 제663조에 어긋난다거나 約款現制法 제 6 조 2항에 違反되어 無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IV. 判決에 대한 批判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1989. 11. 14. 선고, 88 다카 29177 판결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 約款審議委員會의 審決이 있는 후에 내려진 判決이라는 점에서 뜻있는 判例라고 할 것이다.

(1)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綜合保險의 免責條項은 保險加入者의 본래의 의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며, 결국 保險契約의 거래형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信義則에 반하여 公正性을 잃은 것으로 無效라 할 수 밖에 없다」고 判示한 釜山 高法의 原審判決을 깨고, 「이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전보받도록 하고 제 3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범위에서는 이를 제외한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判示한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 다카 29177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의 對人賠償責任保險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被害者의 사망 또는 상해로 법률상 損害賠償責任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약관 9조 1항). 이러한 責任保險의 성격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人的 損害를 입은 피해자 가운데 가령 자동차의 運轉者의 불법행위로 記名被保險者, 그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들이 운전자에게 損害賠償請求를 할 수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그 피해자에게 법률상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자손보험(自損保險)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¹⁵⁾ 책임보험에서 擔保할 위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면책사유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약관 10조 2항 1~3호 참조).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被傭者의 업무상의 災害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產災保險 내지는 使用者賠償責任保險에서 擔保할 것이고 自動車責任保險의 對人賠償範圍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大法院判決은 保險約款의 免責事由의 뜻을 올바르게 제시하여 준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商法 제663조는 「…當事者의 特約으로 保險契約者 또는 被保險者나 保險受益者의 不利益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保險契約者 등의 不利益變更禁止原則을

a. An employee of the "insured" arising out of and in the course of employment by the "insured" or

(15) 綜合保險約款 제22조는 自損保險의 被保險者를 열거하고 있는데,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동 1항 7호)도 被保險者로 들고 있다.

밝히고 있다.⁽¹⁶⁾ 그리하여 保險約款의 免責事由가 商法 제659조의 규정보다 被保險者에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그 條項은 당연히 無效가 된다. 그리고 約款規制法 제6조 이하의 約款條項의 無效事由에 해당하는 保險約款의 條項도 無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保險約款에서 정한 免責事由가 保險者가 擔保하는 危險에서 제외하는 事由인 경우에는 그것은 商法이나 約款規制法의 違反의 문제는 생겨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保險者는 保險契約에서引受한 危險으로 생긴 事項에 대해서만 保險金支給責任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大法院判決이 문제의 免責事由를 保險者의 擔保危險除外事由로 풀이하고, 그 免責條項이 商法 제659조 소정의 免責事由보다 被保險者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約款規制法 제7조 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없이 보험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判示한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約款規制法은 보험약관에 대하여 그 適用排除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保險契約法이나 保險業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약관규제법의 適用을 받게 된다(동법 30조 참조). 이에 따라 1987. 7. 1. 부터 約款規制法이 시행되면서 保險約款의 일부조항이 消費者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그 法에 위반되어 無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 이에 관하여 간단히 덧붙여 보고자 한다.

普通保險約款은 보험자가 동질적인 수많은 보험계약을 締結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보험계약조항으로서 재무부장관의 認可를 받아 사용하는 約款이다(보험법 5조 3항 3호). 다시 말하면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상품에 관한 個別的인 보험계약의 內容을 정하고 있는 것이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보험에 든 危險의 개별적인 差異를 고려함이 없이 同質的인 危險에 관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契約條項이라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團體的 構造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內容統制에 있어서도 보험제도의 성질을 벗어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保險契約은 같은 危險에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危險團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危險共同體 안에서 결합되는 피보험자들의 利益들을 동등하게 평가해서 보험약관상의 부분위험에 포함되는 危險과 이로부터 排除되는 위험을 확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主務官廳의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자의 保險內容決定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그러므로 보험약관이 約款規制法 제6조 이하에서 규정한 無效事由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그 보험상품의 內容을 검토하여 상법 제663조의 이른바 보험계약자 등의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에 따라 보험계약법의 强行規定에 위반되었느냐, 그리고 보험단체의 利益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이다. 왜냐하면 모든 保險保護는 불가피하게 보

(16) 拙著, 견게서, 51면 참조.

(17) 拙稿, 保險約款과 約款規制法上的 問題, 保險學會誌, 第30輯, 13면 참조.

(18) Ulmer/Brander/Hensen, *AGB-Gesetz*, 5 Aufl., 1987. Anh. § § 9-11 Anm. 855.

협약관에 의하여 限界지워져야 하고, 평등한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피보험자의 團體的인 構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¹⁹⁾ 그러므로 保險約款에서 정한 免責事由가 그 保險契約에서 保險者가 擔保하지 아니하는 危險과 관련된 때에는 그 約款條項이 信義則에 어긋나느냐, 公正性을 잃었느냐, 또는 고객에게 그 危險을 돌리고 있느냐는 여부를 따질 수 없는 일이고, 保險約款에 대하여는 가급적 約款規制法의 適用을 배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이 사건 大法院判決이 자동차보험약관의 구속력을 意思說에서 찾고 있는 것은 1985. 11. 26.의 判決⁽²⁰⁾이래 유지되어 온 것이고, 이에 대한 批判의 여지는 있으나, 被保險者의 피용자의 業務上의 災害事故를 免責事由로 한 免責約款은 바로 그것이 自動車對人賠償責任 保險契約의 擔保危險에서 제외된 事由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힘으로써 이 約款條項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분쟁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判例라 생각한다. 그리고 保險約款의 免責條項의 유효·무효는 그 保險契約에서 擔保하고 있는 危險의 성질과 깊은 함수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 두고자 한다.

(19) Wolf/Horn/Lindacher, *AGB-Gesetz*, 2 Aufl., 1989, § S. 1431, Anm. 465.

(2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 다카 2543 판결(법원공보 768호 108면 이하)에 대하여는 拙稿, 普通保險約款의 拘束力, 서울대法學 27권 4호(1986, 12), 158면 이하 참조.